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11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박민규 · 이정문 · 박정현
정진욱 · 윤준병 · 김남희
이춘석 · 정일영 · 서미화
김태선 · 홍기원 · 최민희
손 솔 · 최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확한 관세조사와 관세 추징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내역 등 납세자의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특히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외국에 있어 수입자의 자료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위하여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등에게 장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계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 결정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해야 할 관세보다 과태료 수준이 현저히 낮아 다국적기업 등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과태료 반복 부과가 어려워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조사가 중단되거나 길어지고, 관세청이 소송에서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상 규정된 제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던 과세자료를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제출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에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 등의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과 조세 회피 행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의4제8항 등).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6조의3(관세조사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 및 이행강제금)

- ① 세관장은 납세자가 관세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266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② 세관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 의무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

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수입신고 금액(원화표시 과세가격)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 수입신고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장부등의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관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6조의4(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① 제266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세관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6조의3 및 제26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66조의3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시작된 관세조사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 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① ~ ⑦ (생 략) <u><신 설></u>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 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 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고, 불복신청 시 자료를 제 출하는 경우 세관장(과세당국) 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 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66조의3(관세조사시 과세자료 의 제출에 대한 협조 및 이행 강제금) ① 세관장은 납세자가 관세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266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 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과 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u>

다.

② 세관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 의무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수입신고 금액(원화표시 과세가격)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 수입신고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장부등의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

<신 설>

의 정도·사유 또는 관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6조의4(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① 제266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세관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

	<u>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